

[주주여러분들께]

소규모합병 공고

주식회사 뉴프렉스(이하"당사") 2022년 12월 28일 주식회사 뉴크리텍(이하 "뉴크리텍)과 합병계약 (이하 "본건 합병")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.

- 아래 -

- 1. 합병방법 : 당사가 뉴크리텍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뉴크리텍은 해산함.
- 2. 합병비율 : 당사 : 뉴크리텍 = 1 : 0.3525200
- 3. 소멸회사의 현황
 - 가. 상호 : 주식회사 뉴크리텍
 - 나. 본점 소재지 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만해로 181
- 4. 합병기일 : 2023년 03월 03일
- 5. 당사와 뉴크리텍의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합병함.
- 6. 소규모합병 반대이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 - 가. 행사절차 : 2022년 01월 11일 현재 주주명부(실질주주명부 포함)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본 공고 하단의 [소규모합병 반대이사표시 통지서] 를 기재하여 다. 행사방법에 따라 제출
 - 나. 기간 : 2023년 01월 11일부터 2023년 01월 25까지
 - 다. 행사방법 및 장소
 - (1) 명부주주 : 2023년 01월 25일까지 당사 재무팀에 제출 (☎ 031-362-2322)
 - (주소 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만해로 181 재무팀 앞)
 - (2) 실질주주 : 2023년 01월 22일(※명부주주보다 3일 전)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
 - (제출절차 및 기한은 거래 증권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거래 증권회사에 문의 요망)
 - 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음.
 - 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음.

소규모합병 반대이사표시 통지서

(☞)뉴프렉스 대표이사 귀하

본인은 (☞)뉴프렉스가 (☞)뉴크리텍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따른 소규모합병 절차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

주주번호		주주명	
소유주식의 종류		소유주식수	

2023년 월 일

주소 :
주민(사업자)등록번호 :
성명 : (인)

2022-12-28

주식회사 뉴프렉스 대표이사 임 우 현